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방안 가이드

# 2025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본 가이드는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기업참고용 자료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을 통해 지원됩니다.

※ 발행기준일 : 2025년 5월



# CONTENTS



## 01.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요 1

---

I. 입법·개정 배경	3	IV. 승인 후 주요 사항	8
II.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5	V. 주요 지원혜택	9
III. 신청 방법	7		

## 02. 법 적용 요건 11

---

I. 사업 재편	13
II. 적용범위	15
III. 사업재편계획 목표 설정	29

## 03. 지원 사항 33

---

I.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36	V. 고용안정 지원	102
II. 세제 지원	66	VI. 중소·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105
III. 금융지원	86	VII. 대 중견 기업용 특별지원	107
IV. 연구개발 지원	101	VIII. 자산 매각 지원	110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요

- I. 입법·개정 배경
- II.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 III. 신청 방법
- IV. 승인 후 주요 사항
- V. 주요 지원혜택

## part. I

## 입법·개정 배경

## 사업재편 지원 입법 배경

- 기존 업종전환 지원제도는 부실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 위주
  - 정상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
-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구조 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
  - 일본의 산업활력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 참고
- 기업활력법이 16년 8월부터 운영중

## 개정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 강화

-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인공지능발 산업대전환, 공급망 재편, 경제환경 변화대응 등을 위해 기업활력법 상시법 전환 및 제도 개선
  - 기업활력법 상시화(기업활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23.12), 상시법 전환('24.7))
  - 적용범위 확대((기존)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진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확대 적용)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활동, 공급망 위협 해소



참고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와와의 비교

구분	적용대상	특징
기업활력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급안정 사업재편 (과잉공급 해소, 공급망 위협 해소) 미래 사업재편 (신산업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 기축법·통합도산법 대상 기업 제외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절차 효율화·세제 지원 등)
기축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실(징후)기업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워크아웃) (금융지원(채무조정) 한정) *기축법 일몰 기한: 26년 10월
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실기업	법원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법정관리)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상장법인 제외)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대부분 금융지원)
벤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중소기업 중 벤처 대상) 상장법인 제외(영업양수,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창업 중심 지원

part. II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사업재편제도 개요

-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

구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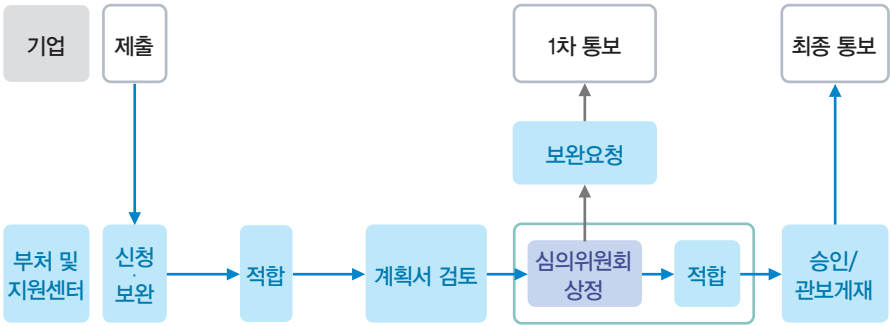
- (승인유형) ①과잉공급해소, ②공급망 위협 해소, ③신산업진출, ④디지털전환, ⑤탄소중립, ⑥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p>① (과잉공급분야)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p> <p>② (공급망 위협 해소)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 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p> <p>③ (신산업진출) ①「조특법」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조특법」국가전략기술 활용분야 등</p> <p>④ (디지털 전환) ①「조특법」신성장·원천기술 '지능정보' 기술 또는 ②「기활법」시행령 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p> <p>⑤ (탄소중립) ①「조특법」신성장·원천기술 '탄소중립' 기술 또는 ②「기활법」시행령 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p> <p>⑥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지역산업위기대응법(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에 따른 산업위기지정 지역에 속한 기업(*24년 기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 없음)</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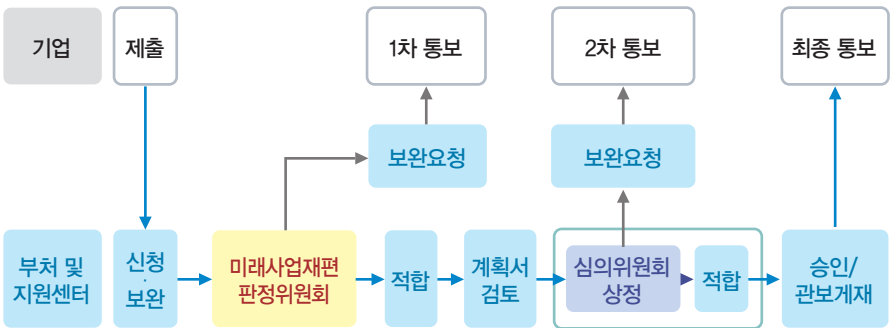


-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 공급망 안정\*,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승인절차 \* 과잉공급 위험, 공급망 위험



## 미래사업재편\* 승인절차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활동



part. III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재편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재편계획서 및 첨부서류
- 제출처 :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www.oneshot.or.kr-신청방법-신청하기)

참고 첨부 서류

작성/제출 서류	증빙 서류	재무제표(최근 3개년 기준)	
		외감법인	비외감법인
1.대표이사 확인서	1.법인등기부등본	1.재무상태표	1.표준재무제표증명
2.기술/제품 소개서	2.정관	2.손익계산서	2.표준재무제표증명_excel
3.회사 소개서	3.임직원수 증빙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4.제조(공사)원가명세서	
	5.보유 지적재산권 증빙	5.재무상태표_excel	

※ 첨부서류는 공급안정, 미래사업, 산업위기지역 유형들의 공통서류이며 제도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산업진출 신청 기업 또는 TCB 신청 대상 기업은 별도의 첨부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음



## part. IV

# 승인 후 주요 사항

### 사업재편계획 이행보고

- 기업은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며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의무
  - 사업재편계획을 추진 중인 경우 : 사업재편계획 승인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재무정보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된 경우(최종보고)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무정보는 사업재편계획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이행보고 의무 미이행 : 승인취소 사유,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주무부처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 이행여부 및 실적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사업재편계획 변경 또는 연장

- 승인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사업재편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재편계획 변경·사업재편계획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사유 : 승인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상황의 상당한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정책환경의 변화 등
  - \* 단,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신청 가능
- 변경신청시 최초 승인신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승인 필요
  - \* 단, 단순한 용어·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무부처 장의 승인만으로 가능

part. V

주요 지원혜택

승인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

- 승인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R&D, 자금 등 기업활력법 관련 부여되는 지원혜택 중 사업재편 계획과 관련된 것을 활용 가능
  -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서에 활용희망 지원혜택 기재·제출 → 심의·승인 → 신청 인센티브의 담당 기관에 지원혜택 신청((예) 산은·기은·신보·기보·중진공 등) → 기관별 지원가능여부 별도 심사 → 지원
  - \*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시 포함된 지원 요청사항 중 심의·승인된 사항만 지원

참고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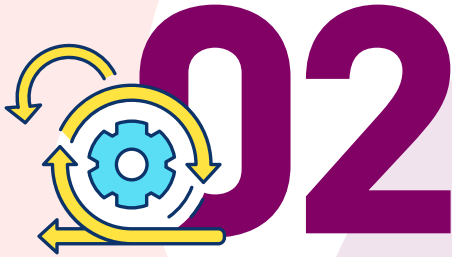
분야	주요 지원 내용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R&amp;D사업 우대가점 부여,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2, 중견4)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은) 최대 △1.0%p, (기은) 최대 △0.5%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5% 적용 및 보증료를 최대 0.5%p 차감 등</li> </ul> </li> <li>•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li> <li>•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지원 비율 2%p 가산 지원</li> <li>• 자산매각 지원(S&amp;LB 방식으로 캠프에서 유동성 공급, '23년 500억 규모)</li> </ul>



## 기업알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활용 애로, 직무전환·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문제 진단 및 해결</li> <li>* (지원규모) 기업별 천만원 이내</li> </ul> </li> </ul>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li> <li>-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li> </ul> </li> <li>• (등록면허세) 합병·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li> </ul>
입지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li> <li>*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li> </ul>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li> <li>•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li> </ul>
정부사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타당성 평가 시 가점 우대(2점)</li> </ul>
상법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물적분할시 절차 완화</li> <li>*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li> <li>•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li> <li>•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li> <li>•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li> <li>•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li> </ul>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li> <li>•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li> <li>•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li> </ul>

※ 지원내용은 제도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법 적용 요건

- I. 사업 재편
- II. 적용범위
- III. 사업재편계획 목표 설정

part. I

사업재편

사업재편의 인정범위

-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조 변경과 사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구조변경)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 (사업혁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참고 ① 사업구조의 변경(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2조)

**제2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 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라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이전·취득·소유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5. 「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양수
7.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 참고 ② 사업의 혁신(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3조)

**제3조(사업의 혁신)**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혁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생산·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키는 활동
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혁신 활동

part. II

적용범위

1 공급안정 사업재편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과잉공급 판단 기준

- 표준산업분류 3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로 판단
  - 업종이 조건1 또는 조건2를 만족하는 경우, 과잉공급으로 인정
- ※ 과잉공급 해당 여부는 기업이 축소 예정인 사업부문 관련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통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조건 1

구분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이상 감소
보조지표	5개 중 (제조업) 2개 이상 만족, (제조업 이외) 1개 이상 만족
↳ 가동률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 재고율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 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 가격·비용변화율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 생산지수	최근 3년의 가격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
↳ 업종별 지표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한 상태
지속성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조건 2	구분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해당 업종의 최근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치보다 20% 이상 <b>감소한 상태</b>
	보조지표	5개 중 (제조업) 2개 이상 만족, (제조업 이외) 1개 이상 만족
↳, 가동률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 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b>큰 상태</b>
↳, 재고율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음수 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b>작은 상태</b>
↳, 가격·비용변화율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4분기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b>작은(큰)상태</b>
↳,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 생산지수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 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b>큰 상태</b>
↳, 업종별 지표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약화된 상태
지속성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공급의 과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참고**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

**제4조(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 보다 상제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확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등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3. 구매자 또는 생산·판매·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항
  - ②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
      -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 과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치보다 20%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작은 상태
  -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4분기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 과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종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산업·기술주기, 경쟁국 투자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거나, 업종의 짧은 이력으로 통계가 부족하여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의견을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 상태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기관 등의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 (2)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 공급망 위협 판단 기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해당 품목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해당 핵심 자원
- ※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후 공급망 위협 판단 확인 가능

**참고 ①** 적용범위(기활법 제4조1항제1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참고 ②** 공급망 위협 해소 적용범위(기활법 시행령 제4조)

①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해당 품목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의 대상이 된 품목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 품목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4호의 경제안보품목
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핵심자원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내 생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류 개선 또는 보관·저장시설 확대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대체기술 개발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변경 또는 다원화

**참고 ③** 공급망 위협 해소 적용대상(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5조의2)

**제5조의2(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하려는 품목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2 미래 사업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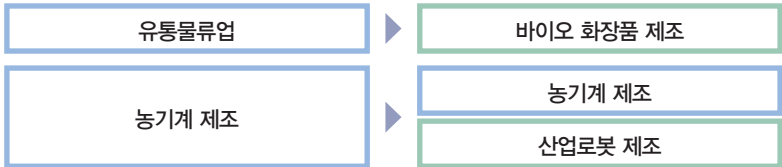
### (1) 신산업 진출

#### 신산업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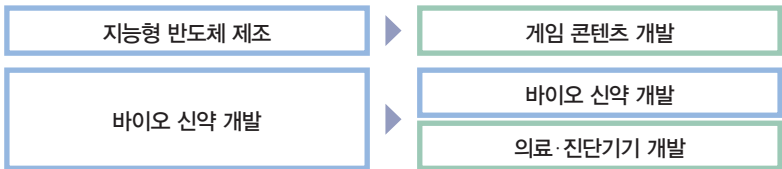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
    - \* 규제샌드박스 4법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 신산업 해당여부는 미래사업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 '신산업 진출 기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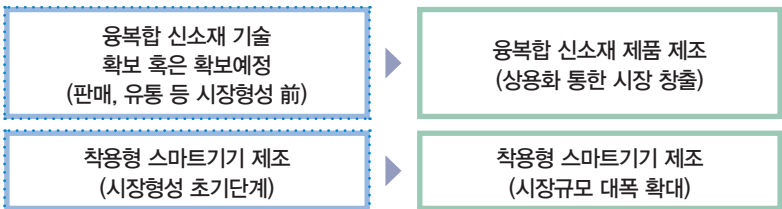
(예시1) 기존산업 → 신산업 진출



(예시2) 신산업 → 타 신산업 진출(신산업 범주 업종 전환·추가)



(예시3) 신산업 국내외 시장창출 및 확대(신산업 범주 동일업종 본격 진출)



※ 구분 :    시장이 없거나 시장형성 초기단계,    기존산업,    신산업

**참고 ①** 신산업의 범위(기할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 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참고 ②** 미래 사업재편의 판단(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2)

**제4조의2(신산업의 판단)**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에 따른 미래 사업

재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진출하려는 분야가 다음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산업융합신제품 또는 제7호의 산업융합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나.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 라. 「산업융합 촉진법」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1호의 융합성 측정지수 평가를 통해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에 속하고, 그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7.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또는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
- 가.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 나.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 다.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 라.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참고 ③ '신산업' 상세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14개 산업, 53개 분야, 270개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 기술로 지정

구분	분야	
1. 미래형자동차(4)	가. 자율 주행차(2)	나. 전기 구동차(2)
2. 지능정보(25)	가. 인공지능(5)	나. 사물인터넷(3)
	다. 클라우드(3)	라. 빅데이터(3)
	마. 착용형스마트기기(5)	바. IT 융합(3)
	사. 블록체인(1)	아. 양자컴퓨터(1)
자. 스마트물류(1)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가. 기반 SW(5)	나. 융합보안(4)
4. 콘텐츠(8)	가. 실감형 콘텐츠(4)	나. 문화콘텐츠(4)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30)	가. 지능형 반도체·센서(11)	나. 반도체 등 소재·부품(10)
	다. OLED(7)	라. 3D프린팅(1)
	마. AR디바이스(1)	
6. 차세대 방송통신(8)	가.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5)	나. UHD(Ultra-High Definition)(3)
7. 바이오·헬스(23)	가. 바이오·화합물의약품(6)	나. 의료기기·헬스케어(7)
	다. 바이오 농수산물·식품(7)	라. 바이오 화학(3)
8. 에너지신산업·환경업(29)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6)	나. 발전시스템(3)
	다. 원자력(11)	라. 오염방지·자원순환(9)
9. 융복합소재(25)	가. 고기능섬유(8)	나. 초경량 금속(2)
	다. 하이퍼 플라스틱(1)	라. 구리합금(2)
	마. 특수강(3)	바. 기능성 탄성·접착소재(5)
	사. 희소·금속소재(4)	
10. 로봇(18)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6)	나. 안전로봇(2)
	다. 의료 및 생활 로봇(6)	라. 로봇공통(4)
11. 항공·우주(12)	가. 무인이동체(8)	나. 우주(4)
12. 첨단소재·부품·장비(25)	가. 첨단소재(9)	나. 첨단부품(8)
	다. 첨단장비(8)	
13. 탄소중립(51)	가. 탄소포집·활용·저장(7)	나. 수소(5)
	다. 신재생에너지(13)	라. 산업공정(13)
	마. 에너지효율·수송(13)	
14. 방위산업(2)	가. 방산장비(1)	나. 전투지원(1)

\* ( ) 해당기술의 개수 \* 위 표에 다른 신성장·원천기술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임.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 반도체(22)	• 이차전지(9)
• 백신(7)	• 디스플레이(6)
• 수소(9)	• 미래형 이동수단(5)
• 바이오 의약품(8)	

## 3. 「산업융합촉진법」상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생산하는 산업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	• 에너지마켓 플레이스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스마트 AED 판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태양광 연계 바나둠 레독스플로배터리 ESS
• 개인 맞춤 화장품원료·화장품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라떼아트 3D 프린터	• 펩타이드 함유 Dermal Filler 의료기기
• 융복합 냉온동시 히트펌프	•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4. 「정보통신융합법」상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	
•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증개 서비스
•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	• 공유주방 플랫폼
• 택시 앰미터기 서비스	• TV 유희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버스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증개 온라인 서비스

5. 「지역특구법」상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	
• 블록체인	• 스마트 안전제어
• 디지털 헬스케어	• e-모빌리티
• 자율 주행차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무인 저속 특장차	• 바이오 메디컬
• 수소 그린 모빌리티	• 친환경 수소차
• 에너지 신산업	• 무인선박
• 전기차 충전 서비스	

6.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산업

지역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은행의 알뜰폰 이용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 소비·지출 관리 연동 소액투자서비스
•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 현금인출 서비스	•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	•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
• 비금융정보 활용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방지 서비스
• AI 로보어드바이저의 보험상품 상담·판매 서비스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 모바일 앱을 통한 계모임 플랫폼 제공 서비스	• 얼굴만으로 간편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
•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해외 여행자보험 스위치(on-off) 가입·해지 서비스	
•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결제정산대행 서비스	
•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다이렉트 보험 e-쿠폰 제공 서비스	
•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제공 서비스	
•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조건을 비교·확인하는 서비스	
•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P2P금융서비스	
•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는 서비스	
• 포인트(선불 전자지급수단) 연계 체크카드 발급·결제 서비스	



## (2) 디지털전환활동

### 디지털전환 기준

- 조세특례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 중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 디지털전환 기술 해당여부는 미래사업재편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참고 ① 디지털전환 판단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 7. 9)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2. 별표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 참고 ② '디지털전환'의 상세 범위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구분	분야		
1. 지능정보(25)	가. 인공지능(5)	나. 사물인터넷(3)	다. 클라우드(3)
	라. 빅데이터(3)	마. 착용형스마트기기(5)	바. IT 융합(3)
	사. 블록체인(1)	아. 양자컴퓨터(1)	자. 스마트물류(1)

\* ( ) 해당기술의 개수

### 2. 별표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 3D 프린팅(1)	• 디지털 트윈(1)
•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3)	• 설계 · 공정 자동화(2)
• 5G/6G 네트워크(1)	• 엣지컴퓨팅(1)

### (3) 탄소중립활동

#### 탄소중립 기준

- 조세특례법에 따른 ‘신성장·원천 기술’ 중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 탄소중립 기술 해당여부는 미래사업재편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참고 ① 탄소중립 판단(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 7. 9〉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 참고 ② ‘탄소중립’의 상세 범위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제2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구분	분야
1. 탄소중립(51)	가. 탄소포집·활용·저장(7) 나. 수소(5) 다. 신재생에너지(13) 라. 산업공정(13) 마. 에너지효율·수송(13)

\* ( ) 해당기술의 개수 \* 위 표에 다른 신성장·원천기술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임.

##### 2. 별표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 철강(3)	• 석유화학(2)
• 시멘트(1)	• 조선(1)
• 섬유(1)	• 수소(1)



###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판단 기준

- 지역산업위기대응법(舊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

\* 24년 1월 기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 없음

- 세부적용 기준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부품·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단, 거래비중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시)

#### 참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사업의 판단(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3)

**제4조의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판단)**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5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판단한다.

※ 국가균형발전법 ⇒ 지역산업위기대응법(2021.8.17 제정)으로 이관

part. III

사업재편계획 목표 설정

1 공급안정사업재편(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생산성 향상 목표(아래 조건 중 1개 만족)

지 표	목표 기준
총자산수익률	2%p 이상 상승
유형자산회전율	5% 이상 상승
부가가치율	7% 이상 상승
기타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의 개선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아래 조건 모두 만족)

지 표	목표 기준
이자보상비율	10% 이상 상승
수익지표	영업이익 > 이자비용



2

공급안정사업재편(공급망 위협해소),  
미래사업재편(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활동)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

투자 및 고용 등의 목표(아래 조건 중 2개 이상 만족)

- 신산업 진출에 필수적인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목표
- 신산업 진출 관련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
- 기타 기업이 사업재편기간 종료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총자산수익률 등 경영지표) 또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지표) 목표 (단, 탄소중립활동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표)

참고 ① 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제7조(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7조)

제7조(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 ①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할 때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기업 단위로 설정하되 분리 설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일부 또는 전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나 고용 목표에 대해서 사업재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산성 및 재무건정성 향상 목표 모두를 설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등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총자산수익률이 사업재편계획 시작 연도 대비 2%p이상 향상
    - 나.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유형자산회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5%이상 향상
    - 다.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7%이상 향상

-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생산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개선
2. 재무건전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10%이상 향상  
나.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익성, 투자 및 고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
2.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목표를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신산업 진출에 필수적인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목표  
나. 신산업 진출 관련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  
다. 기타 기업이 사업재편기간 종료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총자산수익률 등 경영지표) 또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지표) 목표 (단, 기업이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표)
- ④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목표는 기업규모, 관련시장 상황, 동종업계 동향 등 경영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참고 ②** 탄소중립활동 사업재편계획 달성 목표(기활법 시행령 제9조2항)

- ②법 제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목표의 수준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의 경영지표
  2. 온실가스 감축량
  3. 친환경 제조 공정의 도입 수준
  4. 친환경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5. 친환경 제품·서비스의 매출비중



# 03

---

## 지원 사항

- I.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 II. 세제 지원
- III. 금융 지원
- IV. 연구개발 지원
- V. 고용안정 지원
- VI. 중소 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 VII. 대 중견 기업용 특별지원
- VIII. 자산 매각 지원



##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사항 체크!!!

지 원 사 항	Check
<b>I.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b>	
1. 상법	
가. 소규모분할제도 신설	
나.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다. 간이합병 범위 확대	
라. 주주총회 기간 단축	
마.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단축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2. 공정거래법	
가. 지주회사 규제 특례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 특례	
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 특례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 특례	
마. 기업결합심사 특례	
바. 공동행위 인가 절차 병행	
3. 산업집적법 특례(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b>II. 세제 지원</b>	
1. 양도차익 과세 이연(조특법)	
가. 금융채무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나.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2.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조특법)	
가.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 이연	
나.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 이연	
다.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 이연	
3. 적격합병 기준완화(조특법)	
4. 삼각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법인세법)	

지 원 사 항	Check
5. 등록면허세 감면(지특법)	
6.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관세법)	
7. 자본거래(출자전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8.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법인세법)	
<b>Ⅲ. 금융 지원</b>	
1. 중소기업 정책자금	
2. 사업재편 전용자금	
가. 신용보증기금	
나. 기술보증기금	
다. 한국산업은행	
라. 기업은행	
3. 사업재편 펀드 투자	
가. 사업재편전용펀드	
나. 기업구조혁신펀드	
4.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특례	
5.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특례	
<b>Ⅳ. 연구개발 지원</b>	
1. 정부 R&D 지원 사업	
가. 산업통상자원부	
나. 중소벤처기업부	
<b>Ⅴ. 고용안정 지원</b>	
1.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b>Ⅵ. 중소·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b>	
1.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b>Ⅶ. 대·중견 기업용 특별지원</b>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b>Ⅷ. 자산 매각 지원</b>	
1. 한국기계거래소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art. I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1 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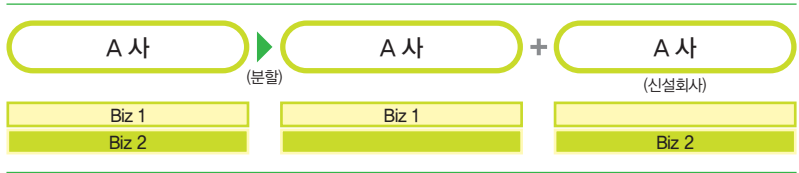
※상법 가, 나, 다, 라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전 법무부 사전협의 필요

- 가. 소규모분할제도 신설      나.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 다. 간이합병 범위 확대      라. 주주총회 기간 단축

가. 소규모분할제도 신설

회사 분할

- 회사 분할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뉘는 조직재편 행위로 회사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



現 상법상 규정

-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분할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

기업활력제고법 ⇒ 소규모분할제도 신설

기업활력제고법은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토록 현행 상법에는 없는 소규모분할제도를 신설 [기업활력제고법 제15조]

**참고 ①** 소규모 분할 특례(기활법 제15조)

-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참고 ②** 상법 제530조의12, 제527조의3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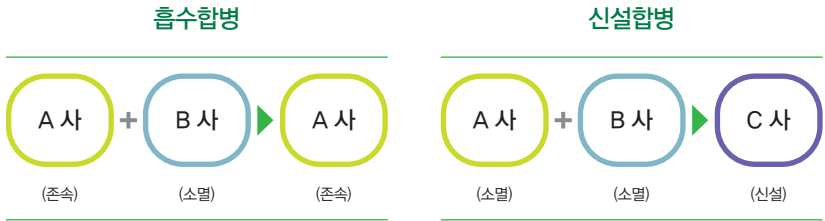
-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 나.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 합병, 분할합병 및 소규모합병

- (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1개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고, 존속 회사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행위
  - 또는 둘 이상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신설된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행위



- (분할합병) 회사의 영업을 분할하여 기존의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시키거나, 다른 회사의 분할 부분과 합쳐져 별도 회사를 신설하는 행위
-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소규모분할합병은 합병·분할합병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로 합병회사(존속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조직재편상 특례

### 現 상법상 규정

-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요건은 합병회사(존속회사)가 피합병대상 회사의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규모가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단,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20%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이사통지를 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기업활력제고법 ⇒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범위 확대

- (요건)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같음
- (제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통지를 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참고 ① 소규모 합병 등 특례(기합법 제16조)

-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 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 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참고 ② 「상법」 제360조의10,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을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 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제530조의1(준용규정)**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간이합병 범위 확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및 現 상법상 규정

- 피합병(피분할)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피합병(피분할)회사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합병(상대방)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합병(피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같음

### 기업활력제고법 ⇒ 간이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범위 확대

- 합병(상대방)회사가 피합병(피분할)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 소유하면 이사회 결의로 같음

**참고 ①** 간이합병 등 특례(기활법 제17조)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참고 ②** 「상법」 제 360조의 9, 제 374조의 3, 제 527조의 2, 제 530조의 11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라. 주주총회 기간 단축

### 주주총회 및 現 상법상 규정

- 주주총회는 주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회사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양수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재편은 주주총회 결의 필요

#### 주주총회 결의방법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 특수결의 : 총주주의 동의 내지 총주주의 일치

- 주식은 수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특정하는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행사 기준일 제도'를 운영
  - \* 주주명부 폐쇄 : 주식 매매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변경을 금지
  - \* 기준일 :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배당금 지급 등 당해 결산기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확정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2주前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도 주주총회 2주前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함

### 기업활력제고법 ⇒ 권리행사 기준일 등 공고 기간 단축 특례

- (기준일 등 공고기간)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을 2주前에 공고토록 의무화 ⇒ 기업활력제고법은 7영업일로 단축
-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개최일 2주前에 소집통지토록 규정 ⇒ 기업활력제고법은 7영업일로 단축

**참고 ①** 합병절차 등 특례(기합법 제18조)

-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 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참고 ②** 「상법」 제354조, 제360조의2, 제360조의4, 제360조의15, 제360조의17, 제363조, 제374조, 제522조, 제522조의2, 제530조의2, 제530조의7, 제542조의4, 「금산법」 제5조, 「사업전환법」 제18조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併”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②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제5조(합병, 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

---



### 마.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단축

#### 채권자 보호절차

- 합병, 분할합병, 분할시 회사 조직과 재산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합병 등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상법상 규정

#### 現 상법상 규정

- (이의제출 공고)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합병 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30일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설정·공고
- (이의제출) 합병 등에 반대하거나 불만이 있는 채권자는 제출기간내에 이의 제출, 미제출시 합병 등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채권변제, 담보제공, 신탁)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 변제, 담보제공 및 재산 신탁 등 조치

#### 기업활동제고법 ⇒ 채권자 보호절차 간소화 및 단축

- (보호절차 생략) 회사가 변제여력 등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가 합병 등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입증방법 :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제출 등
- (이의제출기간 단축) 회사가 변제여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30일에서 10영업일로 단축

**참고 ①** 채권자보호절차 특례(기활법 제19조)

-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 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참고 ②** 「상법」 제232조, 제440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 제530조의11, 「금산법」 제5조, 「사업전환법」 제18조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 기업알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생략)

---

**제5조(합병, 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는 날부터 1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

##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 주식매수청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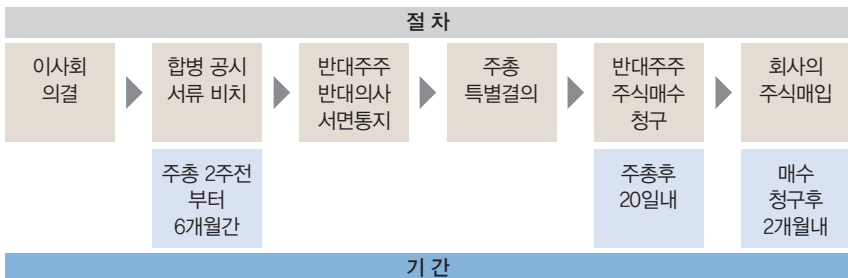
-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의 결의가 다수결로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게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해약 [상 제3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수 [상 제372조 제1항 제3호]
- 합병 [상 제522조3]      • 분할합병 [상 제530조11]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상 제360조5, 제360조22]

### 現 상법상 규정

- (사전통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주주총회前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 (매수청구)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
- (매수대금 지급) 회사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2개월(상장회사는 1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





### 기업활력제고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특례

- (주식매수 청구) 반대이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 결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토록 단축
- (청구대금 지급) 회사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상장회사는 3개월)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

#### 참고 ① 주식매수청구권 특례(기활법 제20조)

-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참고 ② 「상법」 제360조의 5, 제374조의2, 제522조의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 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생략)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참고** 지주회사 규제 특례(기할법 제21조)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 특례**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의 지분율을 규제하고 자회사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나, 일부 사유의 경우 적용유예기간을 인정

구분	구체적 사유	유예기간
제1호	• 자회사가 될 당시 손자회사 주식을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2년
	• 상장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1년
	• 손자회사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손자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	1년
	• 손자회사가 아니었던 회사가 손자회사가 된 경우	1년
	• 손자회사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년
제2호	•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	1년
	• 자회사 설립·전환 당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2년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를 손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년
	•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년
	• 손자회사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1년
	•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한 경우	1년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특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1회에 한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사업재편계획 기간 내로 연장

\* 과잉공급 · 산업위기지역(3년), 신산업진출 · 디지털전환 · 탄소중립 · 공급망 위협 유형(5년)



## 참고 지주회사의 규제 특례(기활법 제22조)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 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 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할 것
2.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피출자기업”이라 한다)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3.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 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 특례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나, 일부 사유의 경우 동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기간을 인정

구체적 사유	유예기간
•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년+2년
•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가 된 경우	1년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무제한

(특례) 사업재편기간동안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 규정이 50%로 완화되면, 손자회사 2개가 동일 증손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자회사간 공동출자 가능

**참고**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 특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소속회사간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① 순환·상호출자를 금지하나, 일부 사유의 경우 6개월의 적용유예기간을 인정

구 분	구체적 사유	유예기간
상호출자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시	6개월
순환출자	•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시	6개월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시	6개월

- ② 채무보증행위를 금지하나, 신규지정 또는 계열편입시 2년간 적용을 유예



### (특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 ① 순환·상호출자 금지 규제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內 승인기업간 채무보증 가능, 유예대상의 경우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사업재편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경우 및 이미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 특례(기활법 제24조)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 8. 12, 2020. 12. 29.>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12., 2020. 12. 29.>
-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12.>

#### ※ 특례기간의 기산점(기활법 제26조)

- 기활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
- \* 공정거래법상 특례는 다른 특례와 달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날이 아닌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개시
- \*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점과 무관히 특례적용 시점을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유예기간 개시일자와 일치시키기 위함

※ **특례적용의 요건(기활법 제26조의2)**

-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 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 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 마. 기업결합심사 특례

### 기업결합심사

- 기업결합으로 일정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부과

### 기업결합신고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 있음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 발행주식 20%(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 취득 또는 소유, 임원 겸임(대규모회사의 경우),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 신고 의무 있음

### 기업활력제고법 ⇒ 기업결합심사 특례

- (기업결합신고 창구 단일화) 기업결합신고 필요시 기업결합신고서 등을 사업재편계획과 함께 제출, 사업재편계획 접수일에 기업결합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주무부처 의견 검토의무) 주무부처는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의견을 검토해야 함



### 바. 공동행위 인가 절차 병행

#### 공동행위 인가

-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에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필요

#### 공동행위 인가 절차

-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 공동행위 내용, 사유, 기간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최대 60일 소유)

#### 기업활력제고법 ⇒ 공동행위 인가 절차 병행

-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 가능

#### 참고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참고 ②**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기활법 제24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참고 ③**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기활법 시행령 제17조의2)

-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 ② 법 제24조의2 전단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처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3 산업집적법 특례(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 현재 산업용지 처분시

- 기존에 산업용지는 처분제한기간 이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매각 가능

#### 처분제한 관련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는 공장설립 완료 후 처분제한기간 이내(5년)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 매각
  - ※ (처분가격) = 취득가격 + 이자 + 비용 + 취득세세금
    - ① 이자 : 취득가격 × 생산자물가 총지수
      - \* 생산자물가 총지수 = (양도월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월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월 생산자 물가지수
    - ② 비용 :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한 지출비

#### 기업활력제고법 ⇒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단, 승인기업은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공장 신축·증축,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무형 자산의 매입,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등에 사용 의무
  - ※ 의무 미이행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환수

**참고 ①**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특례(기업활력법 제31조의2)

-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 2. 사업재편을 위한 공장 신축·증축
  - 3. 사업재편을 위한 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등 유형·무형 자산의 매입
  - 4.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의 구입
  -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②**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특례(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0조의2)

-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 2.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 ②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참고 ③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산업집적법 제39조)

-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④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전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2의3.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입주기업체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 나.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에 입주기업체의 순자산가액(가목에 따른 법인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을 출자할 것
    - 다.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part. II

세제 지원

1 양도차익 과세 이연(조특법)

가.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자격요건

- ▶ 자산양도 및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재편에 따라 자산 양도('26.12.31.前)
- ▶ 양도차익중 일정액을 채무에 상환 또는 일정액을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매각)하여 금융채무를 상환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이연 後 3년 분할납부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③ 제2항 제2호는 제1항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28.>
-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 자격요건

- ▶ 지배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포함) 주식 등 전부를 양도(‘26.12.31前)
- ▶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① 자기주식이나 신주 또는 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전부를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26.12.31前)

\* 계열시간 주식교환도 인정(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사 제외)



### 세제혜택

-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양수주식 등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 증권거래세 : 면제
-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 전부를 특별로 교환 : 취득 당시 과세 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 가능

### 참고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고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⑤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양수의 방법,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4. 제112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li> <li>▶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동일 업종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 26.12.31前)하여 중복자산이 발생</li> <li>▶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li> </ul>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이후 중복자산 처분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후 3년 분할 납부</li> </ul>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시행령 제116조의 35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6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 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삭제 <2016. 12. 20.>

2.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조특법)

가.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 전부 양도 및 자회사 금융채권자 채무 인수·변제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 승인</li> <li>▶ 자회사의 금융채권자 채무 인수·변제</li> <li>▶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26.12.31前)</li> </ul>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이연 後 3년 분할납부, 자회사의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li> <li>▶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li> </ul>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 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 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③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양도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 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 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배주주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계획 및 금융채권자 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 계획 승인</li> <li>▶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① 법인주주로부터 자산 수증 또는 ② 주주 등(개인·법인)으로부터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 수증('26.12.31前)</li> <li>▶ 수증받은 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자금을 금융채권자 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 (① 자산수증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양도대금 수증시 금전을 받은 날)</li> </ul>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이연 후 3년 분할 납부</li> <li>▶ (주주 등) 금전(개인·법인) : 양도대금 중 증여한 비율만큼 양도차익 비과세 금전의 자산 (법인 한정) : 증여재산가액을 손금 산입</li> </ul>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불산입
-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자격요건
▶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이행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26.12.31前)
세제혜택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이연 後 3년 분할 납부
▶ (금융채권자)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 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액”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채무면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적격합병 기준완화(조특법)

사업재편(M&A·퇴출) 촉진을 위해 적격합병 기준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시행령 제116조의35 제3항]

적격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실체를 지속하는 경우, 합병은 형식적 조직개편에 불과하다고 간주→ 합병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 이연</li> <li>▶ 요건(지분·사업 연속성) : ① 인수대금중 주식비중이 80% 이상이고 인수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합병이후 2년간 보유 ② 합병기업은 승계한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 등</li> </ul>

- ① (인수기업) 동종업종 기업간 합병시 대거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신속히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을 인정

(개선) '피합병 회사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요건②)에서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은 제외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35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중복자산의 범위는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 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 자산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 중복지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지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 결손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지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상당액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 <2017. 2. 7.>
- ⑤ 삭제 <2017. 2. 7.>
-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삭제 <2017. 2. 7.>
  2. 삭제 <2017. 2. 7.>
-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 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2. 7., 2019. 2. 12., 2022. 2. 15.>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 ⑧ 법 제121조의3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 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 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지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삼각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법인세법)**

(현행) 삼각분할합병시 세제혜택 부재

(개선) 모회사 주식으로 분할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삼각분할합병)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취득세 과세이연[법인세법 제44조]

**참고** 법인세법 제44조

-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 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 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등록면허세 감면(지특법)

설립등기·합병·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분의 0.4%를 50% 감면('27.12.31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8항]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 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종과기준세율(이하 “종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종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 6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관세법)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4]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계획 이행 도모를 위해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관세법 제10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조

- (대상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구분	대상 기업 요건
신고납부 세액	①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② 최근 2년 체납사실 및 관세법칙이 없을 경우
추징세액·과태료 (보정·수정신고 포함)	① 최근 2년 체납사실 및 관세법칙이 없을 경우 ②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이 아닐 것

- (대상세액) 신고납부세액 및 추징세액(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대상혜택)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구분	대상 기업 요건
신고납부 세액	전년도 실제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최대 6개월) 및 분할납부(최대 3회) 지원
추징세액·과태료 (보정·수정신고 포함)	無담보 납기연장(최대 1년, 과태료는 최대 6개월) 및 분할납부(최대 3회) 지원

- (신청절차) 사업재편계획승인서와 지원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 참고 관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 7 자본거래(출자전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승인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령 제15조 제1항 제4호]

**참고**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 2. 9., 2011. 6. 3., 2016. 4. 29., 2017. 2. 3., 2019. 2. 12.>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8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법인세법)**

(현행)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인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개선)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 100%)

\*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참고** 법인세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6. 4. 29.,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 part. III

# 금융 지원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055-751-9703]

#### 개요

-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경쟁력 제고 및 사업재편 촉진

**지원대상 :** 중소기업

**용자범위 :**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주요 우대사항

-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용자제한 요건(세금채납, 우량기업, 부채비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예외 적용
-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에 사업재편 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을 포함하여 자금지원

### 지원(신청)절차

-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
- (기업 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용자결정 및 대출) 기업평가등급 등 평가결과에 따라 용자여부 결정 및 약정체결 후 대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지역본부	02-2106-7446	강원영동지부	033-649-9373	전남동부지부	061-729-1577
서울동남부지부	02-2023-4304	대전지역본부	042-281-3735	대구지역본부	053-606-8413
서울북부지부	02-769-6418	세종지역본부	044-860-8304	경북지역본부	054-440-5923
인천지역본부	032-837-7023	충남지역본부	041-589-4574	경북동부지부	054-288-7346
인천서부지부	032-560-2364	충북지역본부	043-230-6813	경북남부지부	053-603-3341
경기지역본부	031-260-4913	충북북부지부	043-841-3600	부산지역본부	051-630-7431
경기동부지부	031-760-9009	전북지역본부	063-210-9925	부산동부지부	051-745-5924
경기서부지부	031-783-0610	전북서부지부	063-460-9812	울산지역본부	052-703-1125
경기남부지부	031-899-9104	제주지역본부	064-754-5156	경남지역본부	055-270-9773
경기북부지부	031-920-6711	광주지역본부	062-600-3014	경남동부지부	055-310-6614
강원지역본부	033-269-6933	전남지역본부	061-280-8033	경남서부지부	055-751-291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 1811-3655



## 2 사업재편 전용자금

### 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55]

#### 개요

- 사업재편 추진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승인 사업재편기업 보증」운용 중

#### 지원대상

- 「기업활력법」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우대사항

- (신보) 보증비율 95% 적용 및 보증료율 0.5%p 차감, 보증한도 우대

#### 운용규모

- 2,000억원

#### 자금용도

- 사업재편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신청)절차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문의 (1588-6565)

## 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기획팀 051-606-7687]

### 개요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상자금) 사업재편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지식재산(IP)인수, 연구개발(R&D)·사업화·양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포함
- (지원한도) 기업당 설비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 (지원혜택) 보증료 0.2%p 감면, 보증비율 90% 이상 적용

### 지원(신청)절차

- 사업재편제도 신청(승인) 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신청



### 다.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02-787-6925]

#### 개요

- 사업재편 추진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중 0.2조원을 별도 배정·운용

#### 지원대상

-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등 정부로부터 선별과정을 거친 사업재편 승인기업

#### 지원규모

- 0.2조원

#### 지원혜택

- 금리우대 최대  $\Delta 1.0\%p$

#### 여신기간

- 최대 시설 20년, 운영 3년

#### 자금용도

- 설비투자, R&D투자, M&A, 운영자금 등

#### 지원(신청)절차

- 사업재편제도 신청 전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사전상담
- 사업재편제도 신청 후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신청

## 라. 기업은행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02-729-7492]

### (1) 회사인수자금대출

#### 개요

- 중소기업의 M&A시 주식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지원대상** : 다른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소요자금\*의 50% 이내 지원
  - \* 계약서상 인수금액과 주식 본질가치 환산액 중 작은 금액
- (지원방식) 대출
- (지원혜택) 금리우대,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최대  $\Delta 0.5\%p$  이내추가감면 가능

#### 지원(신청)절차

- 사업재편제도 신청 전 기업은행 영업점 사전상담
- 사업재편제도 신청 후 기업은행 영업점 신청



## (2)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 개요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산업 중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설비투자 지원

### 지원대상

- 미래 핵심동력 산업 영위 기업, 제조업 혁신분야, 유망서비스업 영위 기업 및 혁신성장 부문 영위 기업 등

### 지원규모

- 3년간 총 4,0조원 ('23년~'25년)

### 우대사항

- 대출금리 최대 1.3%p 감면 및 여신한도 우대 등

### 자금용도

- 시설자금대출

### 지원(신청)절차

- 사업재편제도 신청 전 기업은행 영업점 사전상담
- 사업재편제도 신청 후 기업은행 영업점 신청

### 3 사업재편 펀드 투자

#### 가. 사업재편 전용 펀드

[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02-6953-7717]

##### 개요

-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 대상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또는 추진 중인 중소·중견 벤처기업으로서, 아래 조건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업

조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추진기업
①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 <sup>주)</sup> 하고 있는 기업

주) 투자 후 1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완료해야함

##### 펀드 규모

- 750억원(KIAT 70억원, 한국성장금융 180억원, 민간매칭 500억원)

##### 투자 규모

- 기업 당 100억원 이상

##### 투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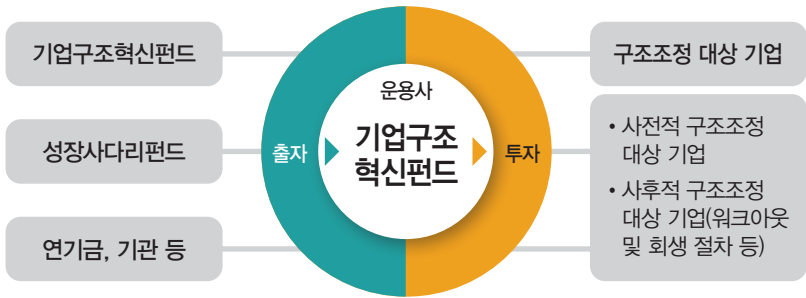


## 나. 기업구조혁신펀드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35]

### 개요

-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시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성장금융의 출자로 구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모펀드)를 기반으로 하위펀드 조성

**지원내용** :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

**투자대상** :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

### 지원(신청)절차

①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 진행

② 투자조건 검토 및 투자의사 결정(하위펀드운용사)

\* 기업IR 등 투자 검토(현장실사, 인터뷰 등 포함) → 투자 규모, 조건 등 투자조건 협의  
 (기업체-하위펀드운용사) → 투자의사 결정(하위펀드운용사)

## 4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특례

###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관련 지원요건을 완화

### 지원대상

1	지방이전기업	수도권 기업(과밀억제권역)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2	신·증설기업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지방에 신규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 지원
- (설비보조금)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일부 지원

### 승인기업 특례

- (현행)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
  - \* 기존 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개선)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 축소 경우에도 지원(신규 투자 > 기존 사업장 축소)
  - \* 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 (현행) 설비보조금은 기업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3 ~ 24% 이내에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지역 구분	지원비율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 (설비) 4%	(입지) 5% (설비) 6%	(입지) 9% (설비) 8%	45:55
균형발전 중위지역	- (설비) 6%	(입지) 15% (설비) 8%	(입지) 30% (설비) 10%	65:35
균형발전 하위지역	- (설비) 9%	(입지) 25% (설비) 12%	(입지) 40% (설비) 15%	75:25
산업위기 대응지역	- (설비) 12%	(입지) 30% (설비) 20%	(입지) 50% (설비) 25%	75:2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5

- (개선)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원비율 2%p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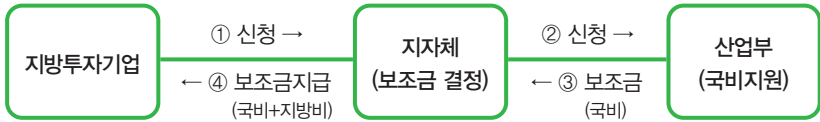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3항 제9호

## 지원(신청)절차

- ① 기존사업장 유지·축소계획, 투자사업장 투자계획, 투자계획이 축소계획보다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
- ②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지자체와 협약체결 등 일반적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참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절차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는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



\*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자동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MOU 체결)에 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지급

※ 기획법 승인 이후에도 지자체와 협약체결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에 충족해야 하므로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승인 이후 지원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



## 5 국내 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96]

### 개요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을 하여 국내에 신·증설 및 유희면적 내 설비 투자하는 경우, 입지·설비투자금액 또는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 해외 진출기업 중에 국내에 신·증설 또는 유희면적 내 설비 투자를 실시하는 국내복귀기업

대상 기업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③	국내복귀보조금 고시 [별지7]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단,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국내 신규 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중 지역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
- (설비보조금)
  - 건설 투자비용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기계장비 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신품 기계장비 구입 비용
    - \*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 (단, 보육시설 제외)
    -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내에서만 인정 가능

### 승인기업 특례

- 유턴보조금 우대지원
  - 사업재편기업이 유턴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점수 2점 가점 부여

### 지원 (신청) 절차

1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	기업 · 지자체 투자협약체결 (MOU)
		↓
2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기초)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
3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1차 타당성 평가 (광역지자체)
		↓
4	지자체(광역)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조금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차 타당성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
5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6	산업부 → 지자체	보조금 교부 (국비)
		↓
7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급 (국비+지방비)

### 신청기한

-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입지+설비) 신청 시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빠른 날)
- 투자협약의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경과 시 불가



## part. IV

# 연구개발 지원

### 1 정부 R&D 지원 사업

#### 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4(참여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7(기술료)]

#### 개요

- 주력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한 산업부 주요 R&D사업 참여 지원, 기업규모별 참여제한 미적용 및 기술료 납부 유예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 지원내용

- 한계기업에 적용되는 과제수행 한도(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예외 적용
- 사업재편 기업이 R&D과제 수행시 기술료 납부 유예

#### 지원(신청)절차

- 산업부R&D 참여신청과 동일, R&D사업별 공고 확인

## 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4-7764(가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72(기술료)]

###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 참여 지원 및 기술료 납부 유예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공고문 내 사업재편 승인기업 우대 시 가점 부여
- 사업재편 계획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이 R&D과제 수행시 기술료 납부 유예

### 지원(신청)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신청과 동일, R&D 사업별 공고 확인



## part. V

# 고용안정 지원

### 1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9]

####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지원대상 사업주

-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업체, 석탄, 철강, 일자리 변동 기업(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내용

-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 \* 단, 전직지원 의무가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비용만 지원.

**지원 금액 및 기간:**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장려금합산\*\* 최대 300만원, 최대 12개월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원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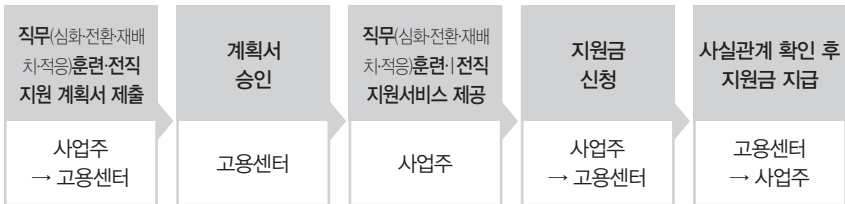
\*\* <사업주 훈련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원(정액)을 100만원내에서 지원

**신청 기한** : 승인 받은 계획서상 훈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 : ① <공통>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훈련  
 ② <사업주 훈련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훈련 실시

**지원(신청)절차**

-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훈련,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기타사항**

- 예산 조기 소진 시 연내 추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시행지침' 참조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317]

### 개요

-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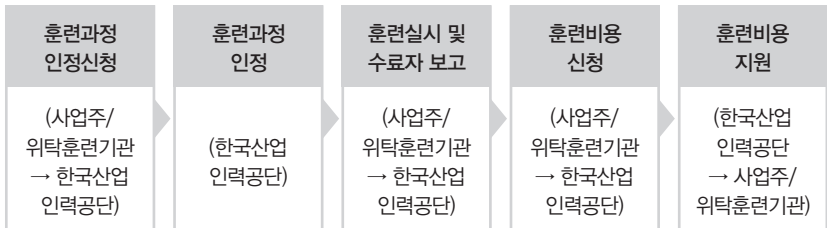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 기업규모별 훈련비 차등지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100%
- ▶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 80%
- ▶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 60%

### 지원(신청)절차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상담센터(1644-8000)

part. VI

중소·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1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02-6050-3835]

개요

-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 기업

- ①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중견·중소 기업
- ② 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점검 보고 의무와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없는 기업

지원내용

- ①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인센티브 맞춤형 설계 지원\*
  - \* 사업재편계획 승인 당시 기재한 인센티브(지원요청사항) 내에서 컨설팅 지원
  - \*\* 사업재편계획 승인 당시 기재하지 않은 인센티브(지원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컨설팅 지원 가능(단, 신청수가 선정규모보다 많을 경우 승인당시 기재한 기업 우선지원)
- ② 사업재편으로 인한 기업의 기술사업화/연구개발/특허조사·분석/마케팅/시장분석 (국내외 산업현황) 등
- ③ 기타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겪는 리스크 관리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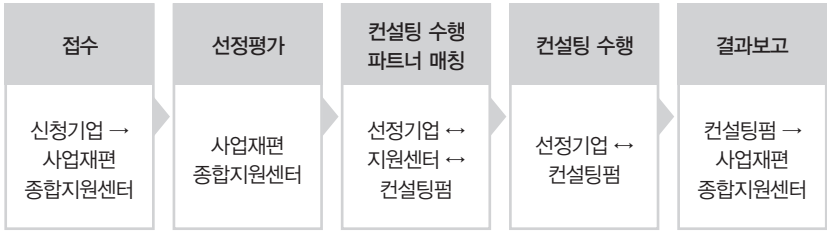
**지원규모 :** 총 3억 원(기업별 천만 원 이내 지원)

**지원기업 :** 30개 내외의 기업(연간)

**지원기간 :** 4개월 내외



## 지원절차



## part. VII

## 대·중견 기업용 특별지원

##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 개요

-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으로 선정

지원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 공동기술개발, 컨설팅·교육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 최근 3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산점 우대\*
  - \*동반성장지수 95점 이상(최우수 기업) : 공정위 직권 조사 2년간 면제
  - \*동반성장지수 90점 이상(우수 기업) : 공정위 직권 조사 1년간 면제
  - \*동반성장지수 85점 이상(우량 기업) : 공정위원장 표창
-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우대\*
  - \*대·중견기업이 협력사에 대해서 '상생형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중 '효율성 증대' 혹은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 참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기활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7조의3)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하 “상생지원”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상생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상생지원 내용 및 기간 등 상생지원 계획
  4. 고용·투자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상생지원의 효과
  5. 상생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 상생지원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⑤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생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상생지원 계획에 비추어 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part. VIII

자산 매각 지원

1 한국기계거래소

[한국기계거래소 경매사업팀 031-8085-5318]

개요

-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생산설비 또는 기업이 보유한 유휴기계설비의 신속·공정한 매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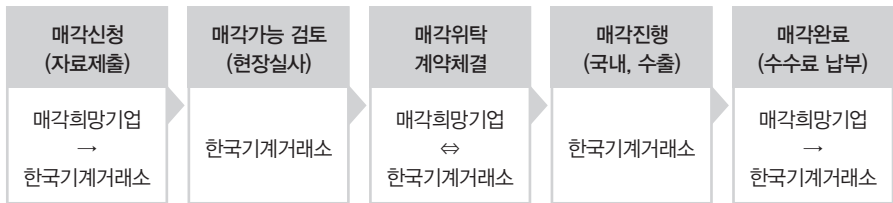
지원대상 :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

지원내용

- (매각 대상) 기업 소유 물건, 담보 제공물건(담보권자 매각동의 필요)
- (매각 방법)
  - 기계거래소에 일정기간(최대 6개월) 독점 판매권한 부여 필요
  - \* 매각이 안될 경우 계약갱신을 통한 기간연장 또는 매각위탁계약 철회
- (매각대행 수수료) 사업재편 기업은 매각수수료를 40%이상 우대 적용

매각대행수수료		금 액(부가세 별도)	납부시기
위탁수수료		20만원/품목	경매위탁계약 체결시
매각 수수료	국내판매	경매 낙찰금액(판매금액)의 1.8% (기본요율 3%에서 40%할인 적용)	매각 성사시

### 지원(신청)절차



\* 한국기계거래소 : [portal.komax.or.kr](http://portal.komax.or.kr)



##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051-794-4542]

### 프로그램 개요

**운영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사업재편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운영·시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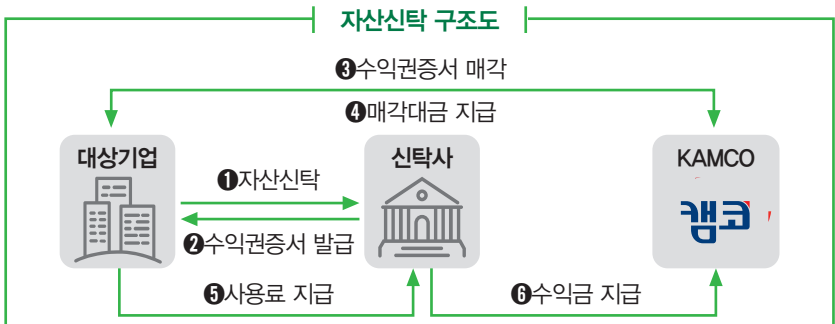
**대상기업** :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

**대상자산** : 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동산(기계장치·설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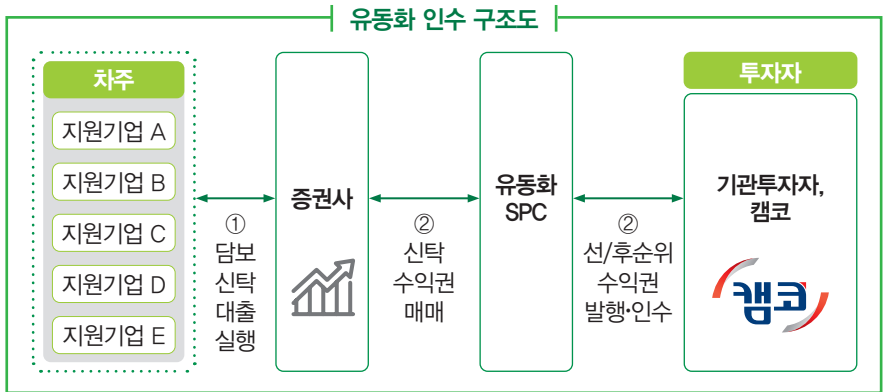
### 프로그램 지원 방식

**지원방식** : 기업의 수요 및 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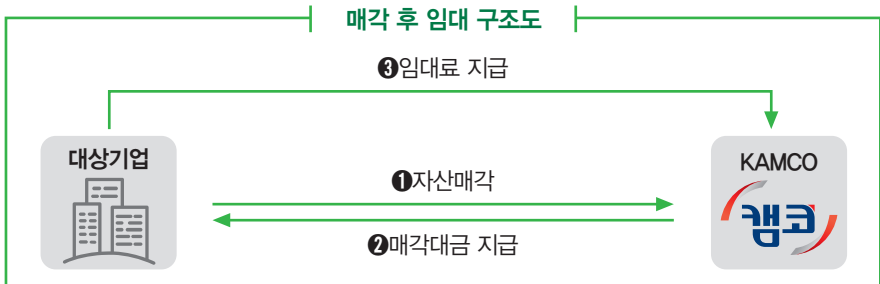
**자산신탁** : 대상자산 ①신탁 후 신탁수익권 발급 ②신탁수익권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③사용료 지급하며 대상자산 계속 사용 ④신탁수익권 재매입하여 신탁계약 해지



**유동화 인수** : 2단계 유동화, ①브릿지론을 활용하여 기존대출 상환 및 대상자산을 담보 신탁하고 ②브릿지론 금전채권신탁 후 이를 기초로 선후순위 ABS 증권 발행



**매각 후 임대** : 대상자산을 ①캠코에 직접 매각 ②임대료를 지급하여 계속 사용 ③일정 기간 이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산 재매입



※ 사용·임대료는 캠코의 조달금리 및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반영하여 산정



## 프로그램 지원 절차



**상담 · 신청** : 면담을 통한 기업의 수요 및 자산의 특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프로그램 신청 여부 결정

**가격결정** : 외부 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등)의 자산가치 평가를 거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가격 결정

**계약체결** : 결정된 가격 및 조건을 기업이 수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

###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의 6층  
Tel. 02-6050-3162~3, 3834~6

### **동남권사업재편현장지원센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2층  
Tel. 051-647-8642~4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방안 가이드

## 2025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